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[별지 제30호의2서식]

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

접수일자	처리기간 **즉시**

변경 구분	변경 항목	변경 전	변경 후
발급업체	업체명		
	통관고유부호		
	대표자		
공급물품 명세	품목번호		
공급받는 보세공장 등 내역	업체명		
	통관고유부호		
	품목번호		

변경사유

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제7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 발급업체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 고 인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세 관 장 귀하

위와 같이 변경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.

20 년 월 일

○ ○ 세 관 장 직인

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자등록증(필요한 경우에 한하며,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) 2. 그 밖에 변경사실 확인을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및 제38조,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